

## 이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(안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년월일 : 2000년 2월 7일  
발의자 : 강기필 의원외 4인

### □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각각 '99. 8. 31 법률 제6002호 및 '99. 12. 31 대통령령 제16672호로 개정되어 각급 지방의회에 정례회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
-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등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### □ 주요골자

- 가. 정례회의의 개최 횟수와 회기·회의일수를 규정함.  
(안제2조 안제3조)
- 나. 정례회의 집회시기를 구체화하고 명확히함.(안제4조)
- 다. 정례회의 개최 시기별로 심의·의결사항을 세분화하여 적용함.  
(안 제5조)

## 이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(안)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8조 및 동법시행령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개최)** 의회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.

**제3조(회기)**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이내로 한다.

**제4조(집회)** 영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. 다만,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.

1.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5일에 집회한다. 다만, 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월·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.
2.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0일에 집회한다.

**제5조(심의)** ①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

②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

**제6조(준용)**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의 운영·의사등에 관하여 필요  
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.

부  
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